

해 양 수 산 부

훈계·주의 요구

제 목 ○○○○ 양어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함양군

관 련 자 ○○○○센터 ○○○과

지방○○주사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주사 ○○○은 2012. 8. 7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양양군 ○○○○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업무를 담당하였다.

함양군 ○○○○센터는 철갑상어를 신성장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축으로 삼아 함양군 물레방아축제, 산삼축제 등과 연계한 철갑상어축제문화를 개발하여 지역 어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사업의 내역사업인 생산 유통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[표 1]과 같이 ‘2014년 철갑상어 양어장 건립사업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)’을 추진하였다.

[표 1] 철갑상어 양어장 건립사업 현황

보조사업자	사업비(백만원)				사업기간
	계	국비	지방비	자담	
○○○○○영농조합법인	1,180	590	236	354	2014. 9. 17.~2016. 4. 29.

1.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

「어촌자원 복합자원화 사업시행지침」(이하 “사업시행지침”이라 한다)에

따르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이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을 제한하고 있다.

따라서 함양군 ○○○○센터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최근 3년 이내 종료된 보조사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.

그러나, 함양군 ○○○○센터는 [표 2]와 같이 2011년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중인(완료 2013. 3. 12.) 보조사업자인 ○○○○영농조합법인이 2013. 1. 31.에 2014년도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을 다시 신청하였는데도 동일 사업자를 제외시키지 않고 2013. 2. 15. 농업·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2014년도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1순위로 선정, 2013. 5. 6. 경상남도 ○○○○과에 2014년 해양수산분야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, 경상남도 ○○○○과에서는 자체심의 등을 통해 2014. 1. 20.(○○○○과-000, 2014년도 어업진흥사업 예산 확정내시 통보)에 확정하였다.

[표 2] 2011년 철갑상어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현황

보조사업자	사업비(백만원)				사업기간
	계	국비	지방비	자담	
○○○○○영농조합법인	960	480	192	288	2011. 3. 25.~2013. 3. 12.

한편 함양군 담당자 ○○주사 ○○○은 ‘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(함양군 ○○○○실-00000호, 2010. 00. 0.)’에 따라 철갑상어 지역특화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.

2. 자부담 확보 없이 보조금 교부 결정

「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」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공사종류별 또는 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대해서는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자부담 전액을 우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.

따라서 함양군은 보조사업자인 ○○○○○영농조합법인이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자부담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보조금 교부시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도록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그러나 함양군 ○○○○센터는 ○○○○○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(접수 ○○○과-00000, 2014. 0. 0.)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(○○○과-00000, '14. 0. 0.)함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관리·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주의]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일정기간 재선정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